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안내

1. 환경부 교통행정과-1315 (2021.10.8.)와 관련입니다.

2. 정부에서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의거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('21년 12월 ~ '22년 3월) 동안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오니

3. 각 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가 바라며,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단속기간 : '21년 12월 ~ '22년 3월

나. 과태료 규정

-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동법 제94조제4항제5호 : 과태료 5만원

※ 붙 임 : 환경부 공문 사본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1 - 190호 (2021.10.19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